

# 현금IC카드 가맹점 잔돈적립서비스 특약서

○○○○(이하 “가맹점”이라 한다)와 하나은행 ○○○○지점(이하 “은행”)은 현금IC카드 잔돈적립 서비스 시행에 있어 “가맹점”과 “은행”간에 기 체결한 “현금IC카드 가맹점약관”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약한다.

**제1조 (목적)** 본 특약은 가맹점이 현금IC카드 잔돈적립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제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용어의 정의)** “현금IC카드 잔돈적립서비스”(이하 “잔돈적립서비스”라 한다)란 가맹점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 결제 후 발생한 잔돈을 가맹점의 입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자가 제시한 현금IC카드(이하 “현금카드”)의 수륙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 “수륙계좌”란 현금카드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관련하여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를 말한다.

## 제3조 (적용범위 및 잔돈적립한도)

- ① 본 특약의 적용범위는 가맹점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 결제 후 발생한 잔돈적립에 한한다.
- ② 현금카드 수륙계좌당 잔돈적립한도는 1회 5만원, 1일 10만원으로 하며, 동 한도가 변경될 경우 은행은 가맹점에 사전에 별도로 통보한다.

## 제4조 (가맹점 준수사항)

- ① 가맹점은 잔돈적립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.
- ②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현금카드에 의한 잔돈적립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 잔돈금액을 초과하여 잔돈적립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.

**제5조 (은행 준수사항)** 은행은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거래승인을 받은 잔돈적립 대금을 가맹점의 입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자의 현금카드 수륙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.

## 제6조 (잔돈적립 거래방법)

- ① 가맹점은 잔돈적립서비스를 요청받은 경우 단말기를 이용하여 거래를 요청한다.
- ② 가맹점은 제1항에 의한 잔돈적립 거래 승인이 완료된 경우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(매출전표)등을 제공하고, 승인이 거절된 경우 직접 잔돈을 지급한다.

**제7조 (잔돈적립대금 정산)** 은행이 가맹점의 입금계좌에서 출금한 잔돈적립대금은 이용자의 현금카드 수륙계좌를 가진 참가기관이 거래요청일 당일 이용자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.

**제8조 (정보유출의 금지)** 가맹점과 은행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잔돈적립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상대방 또는 이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제9조 (손해배상 및 면책)

- ① 가맹점과 은행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특약을 위반함으로써 거래당사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- ② 위 조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금IC카드 가맹점약관 제12조(도난, 분실 및 위변조 현금카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-약관-083호(2023.06.16))

드 거래에 대한 책임) 및 제17조(약관 위반시의 책임)을 준용한다.

#### 제10조 (특약의 변경)

- ① 가맹점과 은행 사이에 개별적으로 서면 합의한 사항이 본 특약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특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- ② 위 조항 이외의 특약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현금IC카드 가맹점약관 제20조(약관변경)을 준용한다.

#### 제11조 (특약의 해지)

- ① 은행은 가맹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별 통지하여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1. 가맹점이 본 특약 제4조에서 정한 가맹점 준수사항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2. 잔돈적립 거래내역을 허위로 조작하거나, 현금거래를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하는 등 가맹점이 본 특약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와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  3. 그 외 “현금IC카드 가맹점약관”상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특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은행은 서면 통지에 의한 이행 최고 또는 시정 요구를 하고, 가맹점은 2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. 그렇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2조 (약관과의 관계) 본 특약은“현금IC카드 가맹점약관”에 우선하여 적용하며, 본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“현금IC카드 가맹점약관”과 “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”에 따른다.

제13조 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 본 특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연장 된다.

제14조 (관할법원) 본 계약상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[부 칙]

1. 이 약관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제정 시행합니다.
2. 이 약관은 2023년 7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

상기와 같이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 이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은행과 가맹점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[가맹점]

[은행]

하나은행

지점

주소:

주소:

대표:

(인)

지점장

(인)